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1,176,184	27,035,286
일반회계	802,771,859	24,083,156
특별회계	98,404,325	2,952,130
공기업특별회계	30,355,868	910,6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355,868	910,676
기타특별회계	68,048,457	2,041,4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7,954	24,839
자활기금특별회계	474,747	14,24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283,000	278,4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0,500	6,61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908,887	57,26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1,858	5,756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237,100	7,113
수질개선특별회계	54,904,411	1,647,1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